

	교원연수규정		문서번호	3-2-11	
			제정일	2010. 03. 01.	
			개정일	2020. 11. 01.	
			페이지	1/13	관리 부서 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 전임교원의 학술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내·해외 연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‘전임교원’이라 함은 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를 말한다.
- ② ‘교원연수’라 함은 국내연수 및 해외연수를 말한다.
- ③ ‘국내연수’라 함은 전임교원이 해당 전공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종업원 5인 이상의 국내산업체, 정부기관, 대학, 연구소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술지도 및 기술훈련, 실무연수, 학술연구 등을 말한다.
- ④ ‘해외연수’라 함은 본대학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한 전임교원이 해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학술연구, 교환(연구)교수, 기술훈련 등의 각종 학술관련 연수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자격 및 연수기관) ① 교원연수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(이하 “연수교수”라 한다)으로 한다.

1. 국내 연수 : 국내 연수교수는 본대학에 만 5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원 또는 직전 국내 또는 국외 교원연수를 마치고 복귀한 후 7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원으로 하되,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.
가. 국내 연수기관은 학생수업 및 실습에 교육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업원 5인 이상의 국내산업체, 정부기관, 대학 및 연구소, 기타 유관기관이어야 한다.
2. 해외연수 : 해외 연수 교수는 본대학에 만 7년 이상 재직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에 한하되,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. 단, 조교수의 경우 타 기관 및 단체의 연수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해 무급 해외연수로써 총장이 허락할 수 있다.
가. 6개월 이상 국내 연수를 수행한 교원이 해외연수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그 기간 만료 후 3년이 경과되어야 한다.
나. 해외 연수기관은 연수교수의 학문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소,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이어야 한다.

제4조(기간) ① 국내연수 기간은 1, 2학기 중 한학기로서 한다.

② 해외연수 기간은 1년 또는 6개월로 한다.

③ 국내연수, 해외연수의 연수시작월은 매 년 3월 또는 9월로 한다.

제5조(신분 및 처우) ① 연수교수는 연수기간 중에 본 대학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한다.

	교원연수규정		문서번호	3-2-11	
			제정일	2010. 03. 01.	
			개정일	2020. 11. 01.	
			페이지	2/13	관리 부서 교무처

또한 연수 기간은 재직연수에 산입하며 연수 기간 중 승진 및 승급은 계속 시행한다.

② 국내연수 기간 중에는 그 해당연도 고정급여 70% 및 교통비 100만원을 지급한다.

③ 해외연수 기간 중에는 그 해당연도 고정급여의 70%를 지급하며, 국외체재지원비로 1회에 한해 미화 5,000불을 지급한다. 조교수 이하의 경우는 보수 및 체재지원비 및 별도의 연구비 지원은 없다.

제6조(신청절차) 국내·해외 연수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국내연수 : 국내연수를 허가받고자 하는 교원은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수개시 2개월 전에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산업체 등 연구기관 연수승인서 또는 관련공문 [별지 제3호 서식]
2. 교원연수신청서, 연수계획서 각 1부 [별지 제1호, 제2호 서식]
3. 연수교수 서약서 1부(별지 제4호 서식)
4. 기타 필요한 서류

② 해외연수 : 해외 연수를 허가받고자 하는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수개시 6개월 전에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연수 초청장 또는 동의서 관련공문 사본
2. 교원연수신청서 및 연수계획서 각 1부(별지 제1호, 제6호 서식)
3. 연수교수 서약서 1부(별지 제4호 서식)
4. 기타 필요한 서류

제7조(복무 및 의무) 연수교수는 연수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① 연수교수는 특별한 사정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정된 연수기간 종료 후 즉시 대학에 복귀하여야 한다.

② 국내연수:

1. 국내연수 교수는 연수 기간 동안 강의 및 실습, 학생지도 업무를 제외한다. 단, 대학 및 연수교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연수 기간 동안 책임시수의 1/3의 강의 또는 실습을 담당할 수 있다.
2. 국내연수를 신청한 교수는 복귀 후 해당학기 전임교원의 책임 강의시간을 담당하여야 한다.
3. 연수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'교원연수복귀보고서' [별지 제8호 서식] 를, 1개월 이내에 '교원연수결과보고서' [별지 제5호 서식] 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해외연수 :

1. 해외연수교수는 연수 기간 종료 후 즉시 복귀하며, 연수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'교원연수복귀보고서' [별지 제8호 서식] 를, 1개월 이내에 '연수결과보고서' [별지 제5호 서식] 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해외연수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, 귀국(복귀)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	교원연수규정	문서번호	3-2-11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3/13	관리 부서	교무처

2. 해외연수교수는 연수 기간 동안 연구 또는 기타 학술 활동한 결과의 실적물(논문 등)을 ‘교원연수결과 실적물 보고서’ [별지 제7호 서식]에 의거, 연수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가. 논문연구 :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1부와 별쇄본 1부

3. 논문의 경우 첫장 여백 또는 적절한 장소에 “이 논문은 ○○○○년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원연수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”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.

④ 위 각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교수는 본대학에서 지원되는 각종 연구비 및 학회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 단, 해외연수의 경우 연구 실적물 미제출시에는 실적물 제출 만료일로부터 3년간 연구비와 학회비 지원을 제한한다.

⑤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연수교수는 귀국 후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우리대학에 봉직하여야 한다. 연수기간이 만료되고도 복귀하지 않거나 귀국 후 의무기간을 완수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간 중에 지급된 연수지원 금액(보수 및 체제지원비)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8조(제한) ① 연수교수는 각 학기에 1명으로 제한한다. 단, 대학의 발전 및 운영에 필요할 경우는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교수의 해외연수 기회는 재직기간 동안 1회로 제한한다.

제9조(선발) ① 연수교수의 선정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.

② 연수교수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선정한다.

1. 직급, 선임자 순

제10조(관련업무의 조치) 국내연수 및 해외연수를 허가받은 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적절하게 조치하여 교내 관련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1. 강의 및 지도업무
2. 연구과제 결과보고
3. 기타 관련업무 등

제11조(시행세칙 등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	교원연수규정	문서번호	3-2-11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4/13	관리 부서	교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교원연수규정	문서번호	3-2-11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5/13	관리 부서	교무처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교원 연수 신청서

[illegible]

	교원연수규정	문서번호	3-2-11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6/13	관리 부서	교무처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연 수 계 획 서

연수자	성명		직급		연락처	
연수기관	기관명		부서명		연락처	
연수과제명						
연수기간	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까지(개월)					
연수목적 및 필요성						
연수계획 및 방법						
기대효과 및 활용방안						
기타						

	교원연수규정		문서번호	3-2-11	
			제정일	2010. 03. 01.	
			개정일	2020. 11. 01.	
			페이지	7/13	관리 부서 교무처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연구기관 연수 승인서

1. 연수교원 인적사항

- 학 과 :
- 직 급 :
- 성 명 :

2. 연수과제명 :

3. 연수기간 :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(개월)

위와 같이 본 기관에서는 상기교수의 연수를 승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연수기관명 :

주 소 :

전 화 번 호 :

대 표 자 : (직인)

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장 귀하

	교원연수규정		문서번호	3-2-11		
	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	페이지	8/13	관리 부서	교무처

【별지 제4호 서식】

연 수 교 수 서 약 서

성 명 :

직 급 :

연수 기간 :

위 본인은 교원연수제도에 관한 규정의 의무사항을 엄수하고 해당기간동안 학술연구에 매진하여 연구 및 연수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서약자

(인)

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 장 귀 하

	교원연수규정	문서번호	3-2-11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10/13	관리 부서	교무처

1. 연수개요	
2. 연수내용	
3. 연수결과 및 성과	
4. 기타사항	

	교원연수규정		문서번호	3-2-11		
	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	페이지	11/13	관리 부서	교무처

【별지 제6호 서식】

연구 계획서

1. 연구과제명	
2. 연구의 필요성	
3. 연구의 목적	
4. 연구방법의 개요	
5. 연구일정 및 세부계획	
6. 기대되는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	
7. 기타 참고사항	

소 속:

성 명: (인)

	교원연수규정	문서번호	3-2-11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12/13	관리 부서	교무처

【별지 제7호 서식】

연구결과 실적물 보고서

작성일 : 년 월 일

연구 과 제 명	
연수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
연구 책임자	성 명 : 직 급 :
연구결과 개 요	
연구결과 실 적 물 내 용	게재학술지 : 발간(발표)년월일 : 호수(편수) : 면수 :

※ 첨부: 연구실적물 1부(논문의 경우 학술등재지 또는 학술등재 후보지에 게재하여야 함)

	교원연수규정	문서번호	3-2-11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13/13	관리 부서	교무처

【별지 제8호 서식】

교원연수복귀보고서

(해외연수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 필히 첨부)

성명		직급	
지원기관	서울여자간호대학교		
수행국가 (수행기관)			
연수 기간	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		
연수결과 및 활용방안			

첨부 :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.

20 년 월 일

보고자 (인)

교무처장 (인)

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 장 귀 하